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35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 김철민·김윤덕·조정식

민형배 • 박찬대 • 송갑석

신동근 • 안민석 • 윤후덕

이병훈 · 이정문 · 이탄희

이해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약화되고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은 계층 이동의 고착화 및 교육격차는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유발, 사회통합의 저해 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큼.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모든 대학에게 해당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 10년 전보다 해당 대상자의 고등기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함.

이에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여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 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 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
	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 비율(이하 "기회균
	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여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
	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
	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